

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,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12. 08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 : 훈련교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보 공시송달
2. 근 거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, 제35조 및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홍한수(57.01.13), 윤기섭(62.04.13)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
사전통지 및 청문통보
4. 공고기간 : 2021. 12. 9. ~ 2021. 12. 22.(14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손효선(Tel. 032-460-49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